

#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[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통합형\_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,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]

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통합형) 「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」, 「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」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4일 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## 1. 모집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높은 해외규격인증 비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추진

### □ 참여기업 모집규모

- 소재·부품·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 ○○개사
-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 ○○개사

### □ 사업기간 : 2022. 9. 14. ~ 예산 소진 시

\* 인증비용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

### 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### □ 사업내용

-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, 시험비, 심사비 등 인증 획득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
  - 해외규격인증 결과물(시험성적서, 심사보고서, 인증서 등)이 **2022.2.1.일 이후** 발급된 건의 비용 지원

\* 정부보조금 지급은 '수출바우처'와 같이 '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' 및 '정산신청' 절차를 거쳐 진행

**<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>**

구 분	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 (해외규격인증 트랙)		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(해외규격인증 트랙)	
	(1) 중소기업	(2) 중견기업	(1) 중소기업	(2) 중견기업
지원규모	00여개사		00여개사	
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한도	1억원		5,500만원	
국고보조율	70%	50%	70%	50%
기업당 최대 지원한도	7,000만원	5,000만원	3,850만원	2,750만원

**2. 지원요건**

□ 지원요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

**지원신청 제외 대상**

- ◆ 휴·폐업 기업
- ◆ 국세·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
- ◆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/기업
  - \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  - \*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(참여제한) 상 열거 사유
- ◆ '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, '21년 또는 '2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, '22년 하반기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상기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  - \* 기존 참여기업 중 '21년 협약기간이 '22.1.31 종료되는 기업은 '22년 사업기간과 중복

되지 않으므로 타 조건 부합 시 신청 가능

\* '22년 상반기 산업부·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사업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타 조건 부합 시 신청 가능

\* 참여기업,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,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(참여제한) 규정에 의거,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.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(제20호)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.

◆ **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지지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(파생모델 포함)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(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)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**

\* 단, 제품(모델)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 이후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

◆ 지자체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·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

◆ **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,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및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**

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	주류, 담배 도매업
	46333	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## □ 세부사업별 지원요건

○ **(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) 소재·부품·장비 업종의 중소·중견기업**

\* 소재·부품·장비 :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, 소재·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·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

\* 소재·부품 업종 구분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 참조

○ **(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) 소비재 제조 중소·중견기업**

\* 소비재 : 화장품·뷰티, 가공식품, 패션·의류, 생활·유아용품, 의약품 등

\*\* 제외대상 : 무역상사

### 3. 세부 지원 항목

#### □ 지원 항목

- [붙임 3] 22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규격인증(388개) 및 시스템 인증(23개)의 인증획득비용(시험비, 심사비, 인증비, 법정대리인비용 등)
  - 시험비 : 인증기관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으로 제품을 시험하는 비용
  - 심사비 :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신규 및 사후 심사비용
  - 인증비 : 인증서 발행비(신규 신청비, 갱신비, 연회비 등)
  - 법정대리인비(현지책임회사비) : 인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(책임자)를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
- \*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대상
- \*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에 미포함
- \* 붙임 3 이외의 비공고규격은 지원대상에 미포함
- \* 연회비는 인증기관의 공식문서(인증서, 비용서류 등)에 연회비 기간 명기된 경우
- \*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은 [붙임 8] 참조
- 신청 시점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인증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서 또는 심사보고서 제출 시 부분완료로 인정, 부분완료된 비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
  - \* (예시) 전기제품 CE의 경우 안전성적서, 전자파성적서, RoHS 등 1개 이상 완료된 경우 부분완료로 신청 가능
- 신청기업이 인증획득비용을 선집행 완료한 후,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
  - 인증결과물(시험성적서, 심사보고서, 인증서 등)이 2022.2.1.일 이후 발급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
## 4.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

### □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

- 건당 50만원 이상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

구 분	(1) 중소기업	(2) 중견기업
지원규모	00여개사	
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한도	1억원	
국고보조율	70%	50%
기업당 최대지원한도	7,000만원	5,000만원

- 인증비, 시험비, 심사비 등을 합산한 인증획득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인 건만 지원 신청 가능
- 인증건수 한도는 없으며, 1회 신청 시 1건 이상의 인증획득비용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
-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[붙임 4]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 참조. 인증획득 소요비용이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초과할 경우,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개별한도 금액의 국고보조율(70% 또는 50%)만큼 지원
- 지원사례 예시

지원 사업	사례	인증획득 소요비용 인정금액	지원금액 (지원비율)	
			중소	중견
소부장	A사가 시험비 15만원, 인증등록비 15만원 등 총 30만원 소요		지원 불가 *인증획득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	
소부장	B사가 인증등록비 600만원, 시험비 450만원, 심사비 500만원, 총 1,550만원 소요	1,550만원	1,085만원 (70%)	775만원 (50%)
소부장	C사가 5가지 제품에 각각 인증등록비 3,000만원씩 1.5억원을 지출한 경우 (기업당 인정한도가 1억원)	1억원	7,000만원 (70%)	5,000만원 (50%)
소부장	D사가 시험비용 3,000만원을 지출하고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, 신청 전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(부분완료)	3,000만원	2,100만원 (70%)	1,500만원 (50%)
소부장	E사가 NRTL 인증에 1,900만원을 지출한 경우 (NRTL 인증 개별한도는 1,800만원)	1,800만원	1,260만원 (70%)	900만원 (50%)

□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

- 건당 50만원 이상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

구 분	(1) 중소기업	(2) 중견기업
지원규모	00여개사	
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한도	5,500만원	
국고보조율	70%	50%
기업당 최대지원한도	3,850만원	2,750만원

- 인증비, 시험비, 심사비 등을 합산한 인증획득 소요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인 건만 지원 신청 가능
- 인증건수 한도는 없으며, 1회 신청 시 1건 이상의 인증획득비용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
-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[붙임 4]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 참조. 인증획득 소요비용이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초과할 경우,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개별한도 금액의 국고보조율(70% 또는 50%)만큼 지원
-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은 [붙임 8] 참조
- 지원사례 예시

지원 사업	사례	인증획득 소요비용 인정금액	지원금액 (지원비율)	
			중소	중견
소비재	A사가 시험비 15만원, 인증등록비 15만원 등 총 30만원 소요		지원 불가 *인증획득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	
소비재	B사가 인증등록비 600만원, 시험비 450만원, 심사비 500만원 등 총 1,550만원 소요	1,550만원	1,085만원 (70%)	775만원 (50%)
소비재	C사가 2가지 제품에 각각 인증등록비 3,000만원씩 6,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(기업당 인정한도가 5,500만원)	5,500만원	3,850만원 (70%)	2,750만원 (50%)
소비재	D사가 시험비용 3,000만원을 지출하고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, 신청 전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(부분완료)	3,000만원	2,100만원 (70%)	1,500만원 (50%)
소비재	E사가 NRTL 인증에 1,900만원을 지출한 경우 (NRTL 인증 개별한도는 1,800만원)	1,800만원	1,260만원 (70%)	900만원 (50%)

## 5. 참여기업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2. 9. 14. ~ 예산 소진 시까지

- 인증비용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가능
- 신청기간 내 50만원 이상 인증획득비용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, 기업당 최대지원 한도금액까지만 지원, 신청회차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예산 한도 내 지원
  -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당 한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

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[www.exportvoucher.com](http://www.exportvoucher.com)) 온라인 신청

\* 홈페이지 URL : [www.exportvoucher.com](http://www.exportvoucher.com) / [www.수출바우처.com](http://www.수출바우처.com)

### [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]

-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-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- 인증서 발급 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

□ 신청 및 선정 절차

지원절차	세부사항
① 사업신청	수출바우처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exportvoucher.com">www.exportvoucher.com</a> ) 에서 인증획득비용 세부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* 인증획득비용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해야 하며,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 서류는 정산 불가
② 서류심사 및 선정	지원요건 부합여부, 지원대상 항목여부,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제출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, 선정결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* 제출서류 미비 시 사전 공지 없이 미선정 처리 가능 (별도 보완 요청 없음)

③ 전자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	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과 협약 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발급
④ 정산신청	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해외규격인증 사후정산 신청 및 지출증빙서류 업로드 * 사업 신청 시 업로드한 증빙서류 재업로드 필요
⑤ 정산금 지급	참여기업의 정산신청 건에 대해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*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 정산 검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.

□ 신청 제출서류 : 붙임 1 신청기업 제출서류 안내문

## 6. 유의사항

- ◆ 신청하는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타 중앙정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,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,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.
- ◆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요건 결격 등의 경우 별도 보완요청 및 사전공지 없이 자동 미선정 처리하고,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.
  -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요건 결격 등으로 미선정된 경우,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기존 탈락 처리된 신청 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- \* (예시) 22.9.6일 1차 접수 후 서류미비로 탈락된 건을 22.9.20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, 신청일자는 22.9.20일 적용
- ◆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의 증빙서류 검수 결과에 따라 지원 신청금액과 실제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◆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, 정산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지 않을 경우,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◆ 동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(22.4) 및 2022년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해외규격인증 전용 정산가이드(22.9)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

## 7. 문의처

구분		문의처
사업신청	온라인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 : "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" 또는 "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(해외규격인증 전용)" 선택 후 작성
	유선	(신청 문의) 1533-4323 (정산 문의) 02-860-1409, 1445, 1485
시스템	유선	IT 헬프데스크 02-3460-3427

- 붙임 : 1. 신청기업 제출서류 안내
2.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세부내역서
  3.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 (2022년)
  4. 수출바우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
  5.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신청 서약서
  6.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
  7. 중국 NMPA 신청 추가서류
  8. 제품시험기관 자격요건. 끝.